

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22. 3. 30.>

◀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

군수 · 구청장
○○○-○○○-○○○ ○○○-○○○-○○○

세외수입
고지서
재증



재건축부담금 안내

- ◎ 근거법령
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◎ 산출방법
· 개시시점 주택가액(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9조)
· 종료시점 주택가액(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9조)
· 정상주택가격상승분(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)
· 개발비용(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11조)
- ◎ 체납자에 대한 조치
·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.
·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「국세징수법」에 준하여 체납처분을 합니다.
- ◎ 납부기한 경과시
·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(고지)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- ◎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.
※ 수납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.

수납의뢰서
(수납은행 보관용)

세외수입	
------	--

납부번호						
------	--	--	--	--	--	--

납부자 :

납기내 금액	까지
합계 금액	
납기후 금액	까지
합계 금액	
납부금액의 배분	· 국가 · 시/도 · 시/군/구

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수납인

재건축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

(납부자 보관용)

납부번호	기관부서코드	연도	회계	과목	고지번호	검

대상사업명 : 성명(또는 법인의 명칭) :
주소 :
생년월일(또는 법인등록번호) :

납부기한	까지	까지
과목	납기내 금액	납기후 금액
합계금액		

총 체납금액

* 상기 체납액은 위 금액을 영수합
별도의 고지서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
납부받아 납부합니다. 년 월 일
담당자 :
전화 :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※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※ 납부장소 : 시중은행, 신한, 수협, 새마을금고, 전국우체국, 농협

재건축부담금 영수증통지서

납부번호	기관부서코드	연도	회계	과목	고지번호	검

(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 구청 보관용)

세외수입

※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.
--

대상사업명 : 성명(또는 법인의 명칭) :
주소 :
생년월일(또는 법인등록번호) :

납부기한	까지	까지
과목	납기내 금액	납기후 금액
합계 금액		

납부금액의 배분		
국가	시/도	시/군/구

부과부서
수납부서
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년 월 일

수납인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